

I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가. 입찰명 : [수의계약 공고]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외부 위탁검사 용역업체 선정
- 나. 계약기간 : 2026.04.08.~2026.12.31.
-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 라. 업체선정 : 종합평가(기술평가 80점+가격평가 20점)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 외부위탁 용역범위

- 가. 본원 원내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위탁
- 나. 위탁기관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검사종목의 연계의뢰 위탁
- 다. 정규이송 시간 이외에 긴급 검체이송 및 응급검사
- 라. 외부정도관리 대상 이외의 항목에 대한 기관 간의 비교검사
- 마. 본원의 연구목적 검사 및 비교검사를 위한 검체의 공급
- 바. 본원의 EMR System과 양방향 Interface로 결과 보고
- 사. 본원의 EMR System과 연계, 전산 및 검사업무 구축
- 아. 주거래 외 외부위탁검체 이송서비스
- 자. 필요시 의료원내 검체 이송서비스(한림대성심병원(평촌), 춘천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3. 참가자격 조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7인 이상, 대한병리학회 질 관리 기준으로 병리 전문의 11명 이상인 업체
- 다. 미국병리학회(CAP: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

- 라.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병리학회가 주관하는 병리과 정도관리에 참가하여 분자병리 분야에 병리과 수탁기관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한국 유전자검사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통과한 업체
- 마.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외 정도관리 참여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대한 병리학회와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 바. 병원 EMR 시스템과 양방향 Interface로 결과보고 및 전산, 검사업무 구축이 가능한 업체(프로그램 연동)
- 사. 내,외부 정도관리(검사업무 Flow, 검체운송 및 보관 냉장, 냉동, 실온 등) 우수한 업체
- 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허가병상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검사 수탁 실적이 200억원(VAT 포함) 이상인 업체
- 자.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

II 사업자 선정방법 및 계약체결

1. 계약방법 :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준한다.)

2. 입찰서/제안서제출 및 평가 방법

가.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 일 시 : 2026.03.17.(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총무팀
- 제안서 : 책 제본 1부 제출 & PDF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업체명 명기)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포기로 간주
- 기술평가는 제출 제안서 기반 평가이며, 별도의 PT를 진행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 위탁검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다. 세부 평가방법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지표분야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입찰가격평가	20점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가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경영 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5	증빙자료
		수행 실적 - 최근 3년 이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거래 실적	10	증빙자료
		인력 현황 - 전문의 인력 및 임상병리사 인력현황 - 면허번호와 재직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	5	증빙자료
	정성 평가 (60점)	사업제안 -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 - 내용의 적정성 - 독창성 및 타당성	30	
		관리능력 - 대병원 서비스 계획/정도관리(검사 질평가) - 사후 관리 계획	3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가격 제안서)		2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부문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비고
기업신용	기업신용도 평가 현황	공인신용평가기관 발급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내)	관련자료 사본제출
수행실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거래 실적(매출액)	실적증명원 서식작성 또는 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서식제6호
인력현황	전문의 인력 현황	전문의 면허번호와 재직기록이 포함되어있는 기관장 직인공문	관련자료 제출
	임상병리사 인력 현황	임상병리사 면허번호와 재직기록이 포함되어있는 기관장 직인공문	관련자료 제출
입찰가격	가격		

다. 정성평가 부문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비고	
기관 운영 및 업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시설, 장비, 인력 등) - 검사실 운영(부서별 업무현황, 검체운송) - 시스템, 검사실적, 검사결과, 개인정보 관리 등 - 검사실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 위탁기관의 비전 및 미션 제시 	제안서 양식	자유서식	
검사실 질관리	인증 내역	- 진단검사의학, 대한핵의학회 우수검사실 인증, 수탁인증, 유전자검사평가 인증	해당 인증서(최신)	관련자료 사본제출
	내부 정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정도관리 프로그램 - 정도관리 지침서 - 정도관리 월별 평가기록 - 정도관리 물질의 허용범위설정(정량검사) -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의 검토, 분석 및 대책수립 현황 	관련자료 작성	자유서식 원본제출
	외부 정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분야별참가 현황 -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의 검토, 분석 및 대책수립 현황 -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참가 외 종목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현황 - 대한핵의학회 핵의학검사 정도관리참가현황 - 대한병리학회 정도관리 분야별 참가현황 	관련자료 작성	관련자료 사본제출

라. 입찰 후 평가내용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1. 제안서 작성

가. 제출수량 : 1부

나. 규 격 : A4(210×297mm), 링 제본, 80쪽 이내

다. 유의사항

- 1) 모든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2) 제안서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신용평가서, 특허증 등) 등은 제안서에 사본 혹은 사진 등을 삽입하여 첨부한다.
-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5)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6)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7)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교법인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따른다.
- 8)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 (외부위탁검사 관련 결과 및 보고서)은 병원 소유로 귀속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법인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학교법인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나.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하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다.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원 해당과에 검사 항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검사 및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과 보고를 위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본원 해당과에서 위탁처를 변경할 수 있다.
- 아. 해당기관은 검사정보의 변경(보험정보, 검사수가, 검사일정, 검사방법 등)으로 인한 안내 공문을 각각 본원 해당부서와 원무팀, 적정진료 관리팀에 전달하여 알린다.
- 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붙 임 : 1. 진단검사의학과 급여/비급여항목 검사건수 1부.
2. 병리과 급여/비급여항목 검사건수 1부.